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4일 02시 31분



목차

목차	2
출산지원금 지원	3
지원대상	3
지원금액	3
신청기한	3
신청방법	3

출산지원금 지원	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원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한방난임치료 지원	신혼 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	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		

지원대상

-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

지원금액

- 첫째아 : 500만원(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)
- 둘째아 : 1,000만원(2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)
- 셋째아 : 1,500만원(3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3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)
- 넷째아 이상 : 2,000만원(4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4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)

신청기한

-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신청방법

출생신고 시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

-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
(지급일은 출생아의 생일달 내에 지급되며 생일달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만 문의 바람)

※ 문의처 :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/ 061-659-4262

Yeosu Web Contents

